

## 1. 개정 이유

직급별로 운영하는 정원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해당 직급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우정사업 업무생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별정우체국 직원 정원의 통합관리 근거마련(안 제11조의2 신설)

근속승진제도 도입으로 별정우체국 직원의 정원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마련

### 나.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속승진제도 도입(안 제11조의6 신설)

당해 직급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

##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

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5부터 제11조의7까지를 각각 제11조의7부터 제11조의9까지로 하고,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로 하며,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정원의 통합관리)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직무의 종류·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별정우체국 직원의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사무원의 사무장·사무주임·사무원
2. 집배원의 집배6급·집배7급·집배8급·집배9급

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사무원 또는 집배원을 승진 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사람이 당해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,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.

제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6(근속승진 임용) ①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 직원의 정원을 통합·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11조의5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,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1. 사무원

가. 사무주임 : 7년 이상

나. 사무원 : 5년 6개월 이상

2. 집배원

가. 집배7급 : 11년 이상

나. 집배8급 : 7년 이상

다. 집배9급 : 5년 6개월 이상

② 퇴직하였던 사무원 또는 집배원이 퇴직 당시 직급 이하의 직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 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배6급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있고,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집배7급으로 한다.

④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배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40분에 해당하는 인원 수(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.)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.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&lt;신설&gt;</u>           | <u>제11조의2(정원의 통합관리) ①</u><br><u>우정사업본부장은 직무의 종류·</u><br><u>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</u><br><u>업무수행 상 문제가 없다고 판</u><br><u>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</u><br><u>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별정우체</u><br><u>국 직원의 정원을 각각 통합하</u><br><u>여 운영할 수 있다.</u><br><u>1. 사무원의 사무장·사무주임·</u><br><u>사무원</u><br><u>2. 집배원의 집배6급·집배7급·</u><br><u>집배8급·집배9급</u><br><u>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</u><br><u>여 운영하는 경우에 사무원 또</u><br><u>는 집배원을 승진 임용하는 때</u><br><u>에는 그 승진된 사람이 당해직</u><br><u>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</u><br><u>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</u><br><u>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, 종전 직</u><br><u>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</u><br><u>다.</u> |
| <u>제11조의2 ~ 제11조의4 (생략)</u> | <u>제11조의3 ~ 제11조의5 (현행 제</u><br><u>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와</u><br><u>같음)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<신 설>

제11조의6(근속승진 임용) ① 제1조의2 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 직원의 정원을 통합·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11조의5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,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.

1. 사무원

가. 사무주임 : 7년 이상

나. 사무원 : 5년 6개월 이상

2. 집배원

가. 집배7급 : 11년 이상

나. 집배8급 : 7년 이상

다. 집배9급 : 5년 6개월 이상

② 퇴직하였던 사무원 또는 집배원이 퇴직 당시 직급 이하의 직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 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배6급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있고,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

갖춘 집배7급으로 한다.

④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배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40분에 해당하는 인원 수(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하다.)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.

제11조의5 ~ 제11조의7 (생략) 제11조의7 ~ 제11조의9 (현행 제11조의5부터 제11조의7까지와 같음)